[서식 예]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서



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

채권자○○○채무자◇◇◆

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〇〇타채〇〇〇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는 아래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에 의하여 채무액을 공탁하였으므로 그 사유를 신고합니다.

아 래

- 1.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날 : 20〇〇. 〇〇. 〇.
- 2. 공탁사유

제3채무자는 배당요구채권자 ●●●(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)의 배당요구통지서를 20○○. ○○. ◇○. 송달 받았습니다.

3. 채무액의 공탁

제3채무자는 2000. 00. 00. 귀원 2000년 금 제000호로 채무액 금 000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에 의하여 공탁하였습니다.

4. 따라서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서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합니다.

첨 부 서 류

1. 공탁서원본 1통

1. 배당요구통지서 1통

20 ○ ○ . ○ . ○ . 의 채권자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제출법원	집행법원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
제출부수	신고서 1부		
기 타	·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음. ②금전 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 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함. ③금 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함.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함. 다만,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, 가압류채권자,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, 채무자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음(민사집행법 제248조).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